

2020년도 전기자동차{택시} 보급사업 공고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기간 : 공고일 ~ 2020. 12. 30.(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신청자격 : 인천개인택시사업자
- 보급대수 : 승용 250대(법인택시+개인택시)
 - 단, 택시용 250대분이 9월30일까지 미 소진 시 10월 1일부터는 민간보급사업과 병행하여 보급예정
- 보급차종

'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제작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BMW	GM	닛산	테슬라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명	아이오닉 ('19, HP)	니로(HP)	SM3 Z.E	i3 94ah	볼트	LEAF	모델S(Standard)	I-PACE
	아이오닉 ('19, PTC)	니로(PTC)					모델S(Long Range)	
	코나 (기본형, PTC)	니로(경제형)					모델S(Performance)	
	코나 (기본형, HP)	쏘울(기본형)		모델 S100D				
	코나(경제형)	쏘울(도심형)		모델 P100D				
				i3 120ah	볼트 EV (F76E0)		모델3(Standard)	
				모델3(Long Range)				
					모델3(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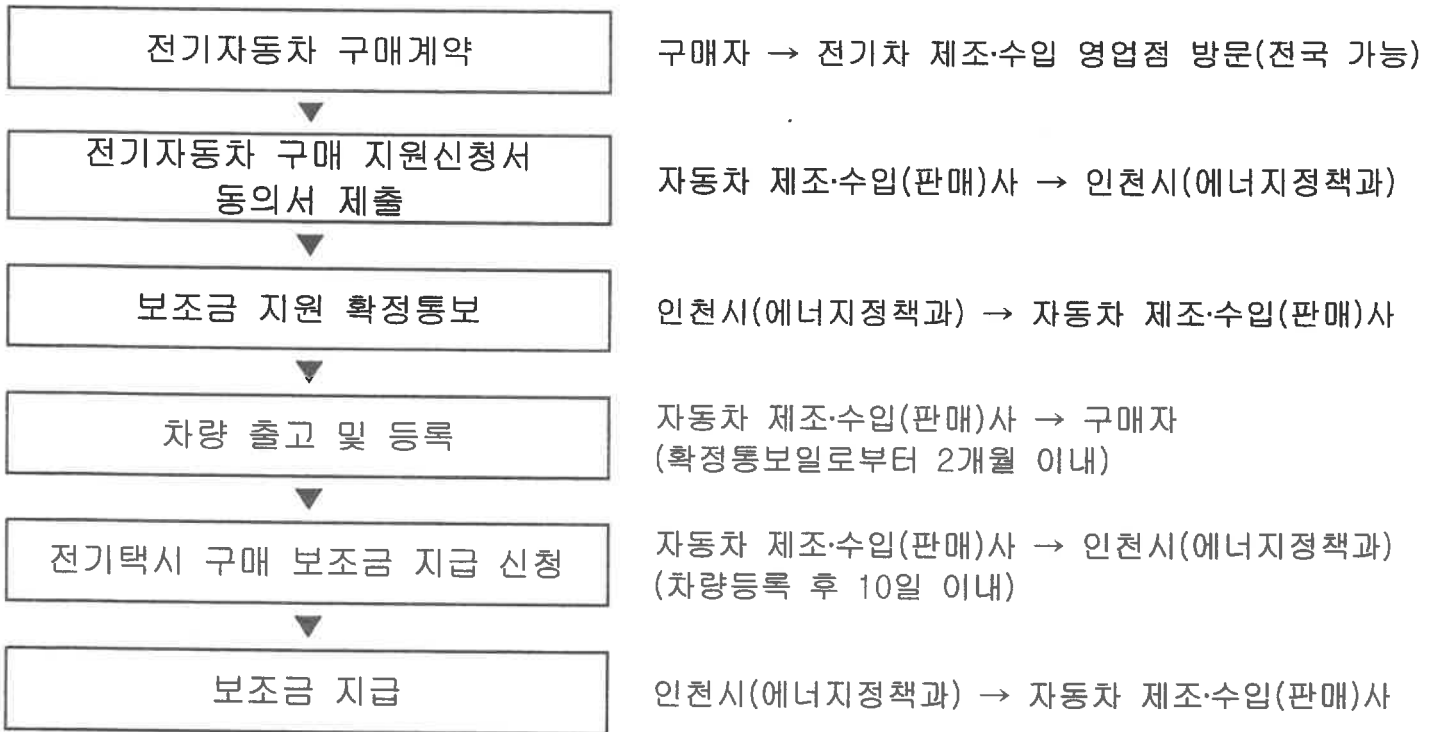
○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차종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승용차	1,185~1,400만원 (+200만원)	605~820만원	580만원	“택시”특별지원금 200만원 추가

○ 신청자격 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사항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전기차 구매신청 및 보조금 지급절차



○ 유의사항

-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인천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한 후 인천시민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가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폐차)시에는 인천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반납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말소(폐차)하고자하는 경우 인천시에 배터리를 반납함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한국환경협회	완속 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1661-0970
인천시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32-440-4357
현대자동차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080-600-6000
기아자동차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080-200-2000
르노삼성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080-300-3000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조합 홈페이지(조합원광장)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